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홍 영 은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성인남녀 291명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의 지각된 범행동기, 범죄노출경험 및 해당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보호행동,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책임 및 비난 정도, 양형 판단을 조사하여, 독립표본 t-test, 카이검정,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동기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여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목격 경험이 많은 반면, 남성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 경험이 더 많았다. 범죄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자기보호행동에서도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자기보호행동을 보고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차별적 태도, 즉 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보고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피·가해자 비난 및 책임, 양형판단)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가해자 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판단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단을 달리 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하위요인은 가해자 책임을 적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높게 평정하는 데 관련이 있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피해자 비난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절 대책에 대해 갖는 함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성차, 양가적 성차별주의, 피해자 비난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 02-2077-7832, E-mail : jsirispark@hotmail.com

‘몰래카메라’ 혹은 ‘도촬(도독촬영, 盜撮)’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전자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의 여러 장면에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11월 H사 회식 장소 화장실에서 입사동기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동기직원을 촬영한 혐의로 퇴사처분을 받은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이해선, 2017.11.06). 가해자는 입사 이전에 동종 전과가 존재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입사에 문제가 없었으며, 입사 후 동일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16 범죄분석(2016)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였다. 성범죄 발생률의 증가와 더불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고 건수는 2011년 기준 1,565명에서 2015년 7,730명으로 다섯 배 증가하였다(경찰청, 2016). 성범죄의 유형을 구별하여 살펴보았을 때, 강간을 포함한 강력 성폭력 범죄의 발생률은 감소하거나 비율이 유지된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률은 급증하여 전체 성범죄의 약 25%를 차지했다(경찰청, 2016).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그만큼 증가했다기보다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전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늘어났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율 또한 높아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전체 성범죄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범죄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검거율이 2015년 기준 97.6%로 높은 반면, 기소율은 31.2%에 불과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경찰청, 2016).

국내 규제법상 ‘도촬’로 알려진 범죄행위는 ① 타인의 사적인 비밀정보를 입수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② 영상물의 불법복제를 위

한 경우, ③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배상균, 2016). 본 연구에서 다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도촬행위를 뜻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5156호, 이하 성폭력특별법) 제 14조를 따른다. 성폭력특별법 제 14조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혹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에 그치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2017)는 2016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몰래카메라 범죄’라 명시하고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다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설명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중교통, 대중목욕탕, 주점, 숙박업소 객실과 같이 공적 및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여 발생하며, 촬영물의 유포 협박 및 실제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차피해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다(배상균, 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다룬 소수의 연구(김영철, 조현욱, 2016; 박혜림, 2017; 배상균, 2016; 송승현, 2017)는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의 판단 여부와 함께 범죄 성립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밖의 연구들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지하철 성범죄의 하위 유형(심현정, 신소라, 조윤오, 2017; 이주락, 2013), 혹은 해수욕장 성범죄(김중오, 함혜현, 2013)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한 성범죄로써 그 실태와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밖에 성범죄 유형별 재범 요인을 비교한 연

구(조윤오, 2016)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가해자가 강간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와는 달리 사무직 관련 종사 비율이 40%를 차지하며, 다른 유형의 성범죄자에 비해 재범률이 두 배 정도 높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해자의 직업 등의 배경 특성이나 재범률 등에서 다른 성범죄 유형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최초의 연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범죄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범죄 인식은 여러 선행 연구(김성미, 박미라, 2014; 김은지, 박지선, 2011; 서윤정, 박지선, 2013; 이선경, 허용희, 박선용, 2015; 이정원, 김혜숙, 2012; Cowan, 2000b; Durán, Moya, Megías, & Viki, 2010)에서 살펴본 바 있다. 먼저 서윤정 등(2013)은 성범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피해자가 느끼는 사건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성범죄 인식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또한 이선경 등(2015)의 연구는 성범죄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거절이 진심으로 느껴지는지,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에 느낀 불쾌감,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성적 만족 정도, 가해 남성 행동의 폭력성, 가해 남성 행동의 남성성 정도를 성범죄 인식으로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또 다른 연구(이정원 등, 2012)에서는 강간 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사건의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비난의 정도, 제시된 시나리오 속 묘사된 성관계가 합의된 성관계인지, 강제적인 성관계였는지를 판단하는 강간지각정도,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처벌

수위와 같은 요인이 함께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이 가·피해자 비난, 사건 발생에 있어 가·피해자의 책임, 양형판단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성범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된 요인 중 하나는 성별이다. 기존의 연구는 강간(이정원 등, 2012), 성추행(서윤정 등, 2013), 언어적 성희롱(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성범죄 인식을 측정하였다. 일부 연구는 사건 관찰자 성별이 강간사건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숙, 한인영, 유서구, 2008; 이선경 등, 2015; 이은숙, 강희순, 2014; 진경선 등, 2017; Cowan, 2000a; Grubb & Harrower, 2008). 이와 반대로 성범죄 인식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 Check & Malamuth, 1984; Viki, Abrams, & Masser, 2004; Yamawaki, 2007)도 나타나, 성별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혼재된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주로 국외 연구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내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성별에 따른 성범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성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검증하기 위하여 성별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범죄 인식

성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인식은 사회 속 개인이 지각하는 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범죄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재은, 김지현, 2016; 이은숙 등, 2014; 황인정, 2007; Chapleau, Oswald, & Russell, 2008; Shearer, Hosterman, Gillen, &

Lefkowitz, 2005).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성차별이 양면성을 지니는 편견의 한 종류라고 정의내린 Glick과 Fiske(1996)가 주장한 개념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가 한편으로는 적대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의미한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두 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한다. 첫째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로, 기존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비난 및 처벌적 태도를 의미한다(안상수 등, 2005). 다른 하위차원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이며, 표면적으로 여성에게 우호적이고 여성을 우대하는 듯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Glick et al., 1997). 다시 말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자 남성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은 여성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남성이 될 수 있다는 지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안상수 등, 2005).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착취와 노골적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는 달리 여성을 남성의 보호 및 부양 아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작동시켜, 결국 성차별주의를 공고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안상수 등, 2005; Glick et al., 1997).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성범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윤정 등, 2013; 윤병해, 고재홍, 2006; 이정원 등, 2012; LeMaire, Oswald, & Russell, 2016).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두 하위차원인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가해자의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정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가진 남녀는 사건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와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서윤정 등, 2013; 윤병해 등, 2006). 마찬가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따라서 성범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따른 성범죄 인식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한 여성의 경우에는 성범죄 발생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서윤정 등, 2013). 또한 온정적 성차별주의 의식, 성희롱 허용도,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폭행 피해를 강간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낮았다(LeMaire et al., 2016).

이정원 등(2012)은 강간 사건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시한 후 성별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관계인 시나리오에서 강간사건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에 있어 관찰자의 성별과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했다(이정원 등, 2012).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인식을 나타냈지만, 그 방향성이 달랐다. 남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더 강할수록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덜 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더 강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더 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을 내렸다(이정원 등, 2012). 여성이 피해자 비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비우호적 판단을 하는 경향성은 서윤정 등(2013)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 목적과 연구질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성범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한 연구문제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동기의 성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험에 성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자기보호행동에는 성차 및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피·가해자 책임 및 비난, 양형판단)에 성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5.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6.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과 관련이 있는가?

측정도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동기 인식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권인숙, 이미경(2015)의 연구에서 분류한 성폭력 통념을 참고하여 여섯 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범행동기는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여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전체 문항은 표 1 참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노출 경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범죄 피해, 가해, 목격 경험을 묻는 아홉 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전체 문항은 표 2 참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자기보호행동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자기보호행동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3 참조). 참가자들은 제시된 자기보호행동에 대해 전혀 하지 않는다(1점)부터 항상 그렇게 한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그 외에 참가자들이 행하는 추가적인 자기보호행동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였다.

가해자 및 피해자 비난

김은지, 박지선(2011)에서 사용한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 문항을 수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각각 0부터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가해자는 ‘몰래카메라 촬영자’, 피해자는 ‘몰래카메라 촬영의 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해자 및 피해자 책임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가해자의 책임 정도를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로, 291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자 모집은 서울 소재 대학 내 게시판 및 대학생 커뮤니티,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등에서 홍보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후 구글 온라인 참가자 모집 시스템이 연동된 사이트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89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45명(50.2%), 남성이 144명(49.8%)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최소 19세에서 최고 53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3.63세($SD = 4.415$)였다. 연령 분포는 10대(26명, 9%), 20대(247명, 84.5%), 30대(11명, 3.8%) 40대(3명, 1%), 50대(2명, 0.7%)였다. 모든 연구대상자에게는 응답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였다.

측정하기 위하여, 0-100까지 범위 내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자의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정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책임 문항은 가해자 책임을 측정한 문항과 그 구성이 동일했으며, 가해자는 '몰래카메라 촬영자', 피해자는 '몰래카메라 촬영의 대상자'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안상수 등(2007)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를 사용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K-MSI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적대적 성차별의식(HS: Hostile Sexism)과 온정적 성차별의식(BS: Benevolent Sexism)을 각 12문항으로 측정한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역할 분화, 적대적 이성애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4문항으로 측정한다. 지배적 남성주의는 여성은 남성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우월한 남성성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안상수 등, 2005). 경쟁적 성역할 분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기에 여성을 하향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의식을 측정한다(안상수 등, 2005). 적대적 이성애는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남성에게 성적 유혹을 사용하다는 반감에 기초한 태도를 측정한다(안상수 등, 2005). 본 연구에서 보고된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42$ 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보호적 남성주의, 보완적 성역할 분화, 친밀한 이성애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이다. 보호적 남성주의는 남성보다 연약한 여성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측정한다(안상수 등, 2005).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여성과 남성을 상호보완적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보고, 각자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성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남

성은 여자 없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태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된다(안상수 등, 2005). 친밀한 이성애는 남녀관계를 낭만적이고 친밀한 관계로만 규정하는 신념을 측정한다(안상수 등, 2005). 본 연구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17$ 로 나타났다.

제시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척도 총점이 높을수록 참가자의 성차별적인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면성별의식검사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50$ 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에 대한 양형판단

성폭력특별법 제 14조 제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자에게 부과할 양형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즉, 본 연구의 참가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양형 수준을 0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절차

연구는 설문참가에 동의한 참가자들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국내 몰래카메라 범죄의 법률적 용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나, 설문지에는 대중매체 및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참가자들에게 보다 익숙한 용어인 '몰래카메라' 혹은 '몰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별법과 여성가족부의 정의를 인용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여

나, 동의하에 촬영했다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제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카이검정, 독립표본 t-test,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 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동기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강력하게 동의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문항이었다, $M = 5.04$, $SD = 1.60$. 가해자의 순간적인 재미를 위한 행동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M = 4.18$, $SD = 1.92$.

성별에 따라 범행동기를 다르게 지각하는지 알아본 결과(표 1), 네 가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

해 가해자가 순간의 재미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반대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으며, 범죄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피해자의 행동으로 돌리는 문항에 대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 경험

연구문제 2를 위하여 성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 경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과 몰래카메라 촬영물 시청 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표 2 참조). 첫째, 타인이 몰래카메라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다. 반면,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두 문항을 제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가해, 피해, 목격과 관련한 다른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all *ns*. 이외에도 몰래카메라 촬영 경험에 대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촬영 경험이 존재하는 남녀가 각각 20명으

표 1. 성별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동기 지각 차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범죄) 범행동기	여성 $M(SD)$	남성 $M(SD)$	t	df
1. 촬영자는 촬영 대상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촬영을 했을 것이다.	4.91(1.64)	5.18(1.55)	-1.441	287
2.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순간의 재미를 위하여 촬영을 했을 것이다.	4.52(1.89)	3.83(1.89)	3.105**	287
3.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호기심에 촬영을 했을 것이다.	3.97(1.98)	3.93(2.08)	.176	287
4.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정신이상자이기에 촬영을 했을 것이다.	2.73(1.82)	3.90(1.90)	-5.331***	287
5.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촬영 대상자의 옷차림이 야해 보이기 때문에 촬영을 했을 것이다.	2.18(1.41)	3.96(1.99)	-8.761***	287
6.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촬영 대상자의 어떠한 행동(영덩이를 살랑이며 걷는다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했을 것이다.	1.97(1.36)	2.91(1.73)	-5.159***	287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 경험의 성차

유형		여성	남성	전체	χ^2	df	Φ
몰래카메라 촬영자 목격	아니오	89 (61.38%)	119 (82.64%)	208	16.188***	1	-.237
	예	56 (38.62%)	25 (17.36%)	81			
몰래카메라 촬영물 시청	아니오	91 (62.75%)	55 (38.19%)	146	17.440***	1	.246
	예	54 (37.24%)	89 (61.81%)	143			
몰래카메라 촬영물 공유	아니오	142 (97.93%)	138 (95.83%)	280	1.054	1	.060
	예	3 (2.07%)	6 (4.17%)	9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 본인	아니오	145 (100%)	143 (99.31%)	288	1.01	1	.059
	예	0 (0.0%)	1 (0.69%)	2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 가족	아니오	145 (100%)	143 (99.31%)	288	1.01	1	.059
	예	0 (0.0%)	1 (0.69%)	1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 지인	아니오	141 (97.24%)	138 (95.83%)	279	0.429	1	.039
	예	4 (2.76%)	6 (4.17%)	10			
몰래카메라 촬영 경험	아니오	125 (86.21%)	124 (86.11%)	249	0.001	1	.001
	예	20 (13.79%)	20 (13.89%)	40			
몰래카메라 장비 구입	아니오	145 (100%)	143 (99.31%)	288	1.01	1	.059
	예	0 (0.0%)	1 (0.69%)	1			
초소형 판매 장소 구경	아니오	144 (99.31%)	143 (99.31%)	287	0.000	1	.000
	예	1 (0.69%)	1 (0.69%)	2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자기보호행동의 성차

연구문제 3을 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자기보호행동과 성별을 기준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3 참조),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기보호행동을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자기보호행동에서 성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의 틈새 및 구멍을 살펴보고, 쓰레기통에 설치되었을지도 모르는 카메라에 대비

하여 휴지통 위치를 옮겨놓거나, 공중화장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하였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 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여성안심보안관 화장실의 사용은 숙박업소나 공중화장실에서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조심하는 자기보호행동 다음으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기보호행동 방식이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자기보호행동 이외에 여성은 호텔 등 숙박업소에 설치된 소형카메라가 두려워 소형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거나 숙박업소에 비치된 벽거울의 이중거울 여부를

표 3. 성별에 따른 자기보호행동 차이

자기보호행동 유형	여성 <i>M(SD)</i>	남성 <i>M(SD)</i>	<i>t</i>	<i>df</i>
공중화장실 틈새, 구멍 확인	5.14(1.601)	2.13(1.77)	15.160 ^{***}	287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위치 옮겨놓기	2.82(1.786)	1.56(1.25)	6.934 ^{***}	287
공중화장실 비이용	3.65(1.801)	1.44(1.02)	12.842 ^{***}	287
숙박시설 소형 카메라 유무 점검	2.79(1.814)	2.04(1.68)	3.653 ^{***}	287
숙박업소 이중거울 여부 확인	3.33(2.105)	2.40(2.01)	3.835 ^{***}	287
몰래카메라 탐지기 소지	1.25(.618)	1.20(.79)	0.562	287
몰래카메라 탐지 어플리케이션 이용	1.71(1.354)	1.40(1.16)	2.078 [*]	287
초소형 카메라 유형 숙지	2.34(1.709)	1.35(1.01)	5.958 ^{***}	287

* $p < .05$, ** $p < .01$, *** $p < .001$

확인하는 자기보호행동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소에서 이중거울 유무를 확인하는 행동은 남성이 가장 많이 보고한 자기보호행동이었다.

그밖에 몰래카메라 탐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형을 파악하는 자기보호행동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소지하며 직접 소형카메라 탐지를 실시하는 등의 자기보호행동에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항으로 제시된 자기보호행동 외 추가적인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추가적인 자기보호행동을 보고한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 107명(83.5%)은 분류된 아홉 가지 항목 외에도 추가적인 자기보호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추가적인 자기보호행동을 보고한 남성 21명(16.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chi^2 = 101.872$, $df = 1$, $p < .001$.

두 번째, 추가적인 자기보호행동을 장소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장소는, 1)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화장실 관련 영역, 2) 공공장소 영

역(계단, 실내 시설, 수영장, 사우나, 탈의실 등), 3)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영역, 4) 숙박업소, 5) 거주 공간,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총 128명 가운데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보고한 자기보호행동을 취하는 장소는 공중화장실(55명, 43%)이고, 공공장소가 두 번째(39명, 30%), 대중교통이 세 번째(27명, 21%)로 그 뒤를 이었다. 숙박업소가 다섯 명(4%)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거주공간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영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내 공간을 살펴보거나, 조심하는 행동을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2명, 2%).

세 번째, 그 밖에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자기보호행동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촬영도구를 찾기 위해 공공장소 및 화장실 변기 등을 살펴보거나, 타인의 핸드폰 화면과 각도를 유심히 보고 경계하는 행동이 있었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피는 행동 이외에도 자신 스스로에 대한 보호행동이 보고되었다. 자기보호행동의 예시로는 ‘지하철 및 계단 등을 걸어갈 때 가방으로 치마 가리기’, ‘짧은 치마 혹은 바지 입지 않기’,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탈의 시 최대한 노출을 삼가기가 포함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

연구문제 4에 답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성별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 및 피해자가 사건 발생에 대해 갖는 책임 및 비난 정도, 가해자에 대한 양형판단 수준을 비교하였다(표 4 참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범죄 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책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더 많은 비난을 가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해자를 향한 비난을 더 많이 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사건발생에 가해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가해자

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를 평정한 양형판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M_{여성} = 33.67$, $SD_{여성} = 20.25$, $M_{남성} = 32.04$, $SD_{남성} = 20.767$.

성별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주의 의식 수준

연구문제 5에 답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먼저, 여성과 남성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보다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 적대적 성차별의식(HS)과 온정적 성차별의식(BS) 모두에 있어 성차가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

표 4.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태도 차이

성범죄 인식	여자 <i>M(SD)</i>	남자 <i>M(SD)</i>	<i>t</i>	<i>df</i>
피해자 책임	13.83(33.34)	26.88(40.091)	-4.108***	287
피해자 비난	10.01(28.81)	40.29(96.027)	-3.133**	287
가해자 책임	97.15(13.27)	94.00(15.56)	1.853 ¹⁾	287
가해자 비난	97.15(5.92)	91.67(14.36)	4.249***	287
가해자에 대한 처벌(개월)	33.67(20.25)	32.04(20.767)	.675	286

1)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양가적 성차별주의 의식의 성차

척도	여자 <i>M(SD)</i>	남자 <i>M(SD)</i>	<i>t</i>	<i>df</i>
적대적 성차별주의	16.37(14.40)	33.17(14.95)	-12.39***	287
지배적 남성주의	5.41(2.80)	10.53(4.78)	-11.11***	287
경쟁적 성역할분화	5.48(2.81)	10.85(5.26)	-10.80***	287
적대적 이성에	5.48(2.69)	11.80(5.69)	-12.08***	287
온정적 성차별주의	23.29(11.24)	41.38(14.95)	-11.62***	287
보호적 남성주의	7.99(4.12)	12.84(5.42)	-8.55***	287
보완적 성역할분화	8.56(4.95)	14.88(5.72)	-10.05***	287
친밀한 이성에	6.74(4.61)	13.67(6.96)	-9.97***	287

* $p < .05$, ** $p < .01$, *** $p < .001$

은 두 배 정도 적대적 성차별주의적인 태도를 더 많이 나타냈다. 온정적 성차별의식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차별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역할분화, 적대적 이성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존재했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차등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구성하는 세 하위요인인 보호적 남성주의, 보완적 성역할분화, 친밀한 이성애 의식 또한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차별적인 시각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 간의 관계

연구문제 6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연구대상자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표 6 참조). 먼저,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두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간의 상관이 높았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자 비난을 적게 하였으며, 가해자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정도가 덜하다고 판단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척도와 관련하여 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역할 분화, 적대적 이성애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는 적게 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를 더 많이 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6.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675***												
3	.947***	.670***											
4	.950***	.638***	.883***										
5	.932***	.606***	.808***	.810***									
6	.497***	.835***	.509***	.455***	.446***								
7	.643***	.861***	.620***	.627***	.574***	.566***							
8	.607***	.904***	.606***	.567***	.547***	.655***	.663***						
9	-.346***	-.192***	-.354***	-.361***	-.271***	-.172**	-.165**	-.164**					
10	-.378***	-.246***	-.391***	-.400***	-.285***	-.158**	-.240***	-.235***	.447***				
11	.164**	.111 ¹⁾	.172**	.147*	.146*	.044	.073	.159**	-.017	-.152**			
12	.339***	.255***	.353***	.312***	.298***	.172**	.255***	.229***	-.105 ¹⁾	-.248***	.460***		
13	-.087	-.029	-.075	-.111 ¹⁾	-.062	-.031	-.063	.014	.252***	.097 ¹⁾	.079	.083	

1) $p < .10$, * $p < .05$, ** $p < .01$, *** $p < .001$

1: 적대적성차별주의, 2: 온정적성차별주의, 3: 지배적 남성주의, 4: 경쟁적 성역할분화, 5: 적대적 이성애, 6: 보호적 남성주의, 7: 보완적성역할분화, 8: 친밀한 이성애, 9: 가해자비난, 10: 가해자책임, 11: 피해자비난, 12: 피해자책임, 13: 양형판단

온정적 성차별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는 사람 역시, 가해자에게 비난을 적게 하고 가해자가 사건 발생에 저야하는 책임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적 여성주의, 보완적 성역할분화, 친밀한 이성애와 관련된 태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해자 책임과 비난은 적게 하였다.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 피해자 비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하위요인은 친밀한 이성애가 유일했으며, 남녀관계를 낭만적이고 친밀한 사이로만 인식할수록 사건 피해자에게 높은 수준의 비난을 가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양형판단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척도인 경쟁적 성역할분화와 양형판단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경쟁적 성역할분화 태도를 많이 보일수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더 낮게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양형판단과 피해자에 대한 판단(피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반면 양형판단과 가해자 비난, $r = .252, p < .001$, 가

해자 책임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098, p < 0.10$. 유의확률이 $p < .10$ 으로 약하지만, 가해자 비난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판단을 많이 할수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경향성이 존재했다.

성별 · 양가적 성차별주의 의식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의 관련성(회귀분석)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중다회귀분석의 기준변인은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 양형판단이었으며, 예측변인은 성별, 적대적 성차별주의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 하위요인였다.

먼저, 기준변인을 가해자 비난으로 하여 성별,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척도 세 가지(지배적 여성주의, 경쟁적 성역할분화, 적대적 이성애),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척도 세 가지(보호적 여성주의, 보완적 성역할분화, 친밀한 이성애)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표 7. 피해자 비난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코딩: 여성:1, 남성: 2)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	
	B	β	B	β	B	β	B	β
상수	102.966		100.569		-4.376		-7.264	
성별	-2.549	-.113	4.539	-.157*	21.691	.149*	3.882	.054
적대적 성차별주의								
지배적 여성주의	-.573	-.237 ¹⁾	-.845	-.272*	2.585	.166	2.512	.327*
경쟁적성역할분화	-.693	-.306*	-.971	-.334**	-.414	-.028	-.291	-.041
적대적 이성애	.288	.139	.340	.128	-.286	-.021	.104	.016
온정적 성차별주의								
보호적여성주의	-.099	-.047	.118	.044	-1.838	-.136 ¹⁾	-.316	-.048
보완적성역할분화	.222	.122	-.007	-.003	-1.355	-.115	.367	.063
친밀한 이성애	.140	.085	-.121	-.057	.140	.176 ¹⁾	.034	.006

1)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결과, 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7, 288) = 7.548, p < .001$, 설명력은 약 14%로 나타났다, $R^2 = .137$. 참가자의 지배적 부성애주의와 경쟁적 성역할분화가 가해자 비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적 부성애주의 및 경쟁적 성역할분화에 대한 태도가 강할수록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덜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가해자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정도를 기준변인으로 하고, 동일한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7, 288) = 1680.376, p < .001$, 설명력은 약 17%였다, $R^2 = .174$. 성별, 지배적 부성애주의, 경쟁적 성역할분화 태도가 가해자 책임 정도 인식과 관련성을 보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가해자의 책임을 낮게 평정하며, 지배적 부성애주의 태도와 경쟁적 성역할분화 태도를 높게 가지고 있을수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에 있어 가해자의 책임이 덜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세 번째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에게 가하는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모형은 적합하나, $F(7, 288) = 2.653, p = .011$, 설명력은 미미했다, $R^2 = .039$. 피해자를 비난함에 있어 성별과 보호적 부성애주의, 친밀한 이성애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친밀한 이성애주의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더 많은 비난을 가하며, 이와 반대로 여성은 남성보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보호적 부성애주의 태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피해자 책임을 기준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F(7, 288) = 5.999, p < .000$, 설명력은 약 10%였다, $R^2 = .108$. 피해자 책임전가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을 보이는 유일한 요인은 지배적 부성애주의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권력이 있으며, 지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수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더 많이 전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에 대한 양형판단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동일한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F(7, 288) = 1.369, p = .187$, 독립변인인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 추론이 불가능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 양형판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 의식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동기, 범죄 노출 경험, 자기보호행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여성에 비해 남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에 전가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러한 피해자 책임전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권인숙, 이미경, 2015)이다. 또한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일 것과,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문항은 가해자에 대한 통념이다(권인숙, 이미경, 2015). 이러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통념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묻는 이차 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환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경험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본 범죄의 범행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몰래카메라 촬영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목격한 당시의 경험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이재영, 유영재, 2014). 실제 범죄두려움과 자기보호행동이 정적 상관에 있다는 연구(전영실, 송재현, 전현욱, 2016)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자기보호행동을 보고한 결과 역시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의 목격경험이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았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영상물을 방관하는 행위로 가해경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불법촬영된 영상물을 보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가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 참가자 중 남성과 여성 각각 20명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지인이나 다른 사람의 영상 및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행위가 만연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에 제시된 피해 당시 상황 및 촬영 부위를 보면, 다리나 허벅지 등의 신체 일부, 전신, 뒷모습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 증거가 보고되었다(전윤경, 2016). 본 연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다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카메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인이나 다른 사람의 영상 및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경험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은 “인격제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설령 지인의 뒷모습이라도 해도, 그것이 동의 없이 촬영된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환기가 필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에서 나타난 성차는 성범죄 인식을 연구한 이전의 연구(박명숙 등, 2008; 이선경 등, 2015; 이은숙 등, 2014; 진경선 등, 2017; Cowan, 2000a; Grubb et al., 2008) 결과와 일치했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에게 강한 비난을 가하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은 적게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남성 참가자들이 높은 수준으로 동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통념에 근거했던 것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해자 비난과 양형판단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황인정, 2007)와는 다른 결과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 정도 및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에 대한 판단과, 실질적인 처벌 수준에 대한 판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적인 태도를 더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성차를 살펴본 선행연구(김재은 등, 2016; 서운정 등, 2013; 조무용, 김정인, 2016; 최은하, 2013)와 일치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하위척도인 보호적 여성주의와 친밀한 이성애 의식은 범죄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수준과 관련성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반

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교적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함께 보다 은밀한 불평등의 형태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기여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의식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보호적 부성에 태도를 강하게 나타낼수록 피해자 비난을 적게 하였지만, 그 기반은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인식의 시정이 필요하다.

2017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시작점이었다. 2017년 10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가 주최되고, 보복성 영상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및 삭제비용 부과, 원스톱 피해 지원,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정기점검 등을 골자로 여러 정책들이 소개되었다(여성가족부, 2017.09.27). 또한 성범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24일 통과되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보호 및 구제하는 많은 정책들이 발의 및 시행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이고 사후처리적인 대책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예방이 어려우며,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현저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고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이 20대에 집중되어 있어 후속 연구에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각 연령대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을 조사하고, 이것이 성별과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지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대중교통 내에서 신체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 보복성 불법 촬영물,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상업적 불법촬영물처럼 직접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행위는 판단자들이 지각하는 범죄의 경중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다양한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죄발생의 장소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내 혹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범행 특성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범죄의 경중, 피해자 및 가해자의 책임과 비난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각 장소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정부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몰래카메라’의 용어가 심각한 범죄를 가볍고 장난처럼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대체사용을 권고하였다. 후속 연구는 ‘몰래카메라’와 ‘불법촬영’의 용어 사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6). 경찰범죄통계.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9>에서 검색.
- 권인숙, 이미경 (2015).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성폭력 통념 비판과 피해 의미 재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 김성미, 박미라 (2014). 남녀고등학생의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2), 970-978.

- 김영철, 조현욱 (2016).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 여부. *법학연구*, 57(3), 151-177.
- 김은지,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171-183.
- 김중오, 함혜현 (2013).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 위기관리논집*, 9(6), 167-182.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 대검찰청 (2016). 2016 범죄분석.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_2016.jsp 에서 검색
- 대법원 (2008.9.25.) 대법원 선고 2008도7007 판결.
- 박명숙, 한인영, 유서구 (2008).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6(2), 123-146.
- 박혜림 (2017).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 23(3), 101-126.
- 배상균 (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7(1), 199-227.
- 서윤정,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33-59.
- 송승현 (2017).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 24(1), 337-364.
- 심현정, 신소라, 조윤오 (2017). 대학생의 일상활동이 지하철 성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9(1), 39-61.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 2-204.
-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68.
- 여성가족부 (2017.09.27).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608> 에서 검색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65-81.
-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18-56.
- 이재영, 유영재 (2014).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1), 170-202.
- 이정원, 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47-73.
- 이주락 (2013).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별 실태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75-196.
- 이혜선 (2017.11.06). 한샘, 사내 성폭행 '일과만 파'... 누리꾼 공분, 불매운동으로 확산.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4897> 에서 검색
- 전영실, 승재현, 전현욱 (2016).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12, 1-376.
- 전윤경 (20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19(3), 113-144.
- 조무용, 김정인 (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

- 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109-134.
- 조운오 (2016). 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2(4), 147-170.
- 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 단채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89-313.
- 최은하 (2013). 경찰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 비교. *한국위기관리논집* 9(11), 115-131.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11-125.
- Chapleau, K. M., Oswald, D. L., & Russell, B. L. (2008). Male rape myths: The role of gender, violence and sex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5), 600-615.
- Check, J. V. P., & Malamuth, N. M. (1984). Can there be positiv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pornography experiments? *Journal of Sex Research*, 20(1), 14-31.
- Cowan, G. (2000a). Beliefs about the causes of four types of rape. *Sex Roles*, 42, 807-823.
- Cowan, G. (2000b). Women's hostility toward women and rape and sexual harassment myths. *Violence Against Women*, 6(3), 238-246.
- Durán, M., Moya, M., Megías, J. L., & Viki, G. T. (2010). Social perception of rape victims in dating and married relationships: The role of perpetrator's Benevolent Sexism. *Sex Roles*, 62(7-8), 505-519.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 & Fiske, S. T.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19-135.
- Grubb, A., & Harrower, J. (2008). Attribution of blame in cases of rape: An analysis of participant gender, type of rape and perceived similarity to the victi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5), 396-405.
- LeMaire, K. L., Oswald, D. L., & Russell, B. L. (2016). Labeling sexual victimization experiences: The role of sexism, rape myth acceptance, and tolerance for sexual harassment. *Violence and Victims*, 31(2), 332-346.
- Shearer, C. L., Hosterman, S. J., Gillen, M. M., & Lefkowitz, E. S. (2005). Ar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associated with risky sexual behavior and condom-related beliefs? *Sex Roles*, 52(5-6), 311-324.
- Viki, G. T., Abrams, D., & Masser, B. (2004). Evaluating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Sexism in perpetrator blame and recommended sentence length. *Law and Human Behavior*, 28(3), 295-303.
- Yamawaki, N. (2007). Rape perception and the function of Ambivalent Sexism and gender-role traditiona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4), 406-423.

1 차원고접수 : 2018. 04. 09.

수정원고접수 : 2018. 06. 22.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1.

Perceptions of criminal voyeurism: Based on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Youngeun Hong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criminal voyeurism (illegal shooting crim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 total of 291 males and female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Questionnaire involved criminal motives, crime exposure experience, self-protection behavior, victim and perpetrator blame, responsibility, and sentence judgment, and Ambivalent Sexism scale.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chi-squar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Gender difference were found on perception of criminal voyeurism: Women and men differently perceived motives for criminal voyeurism. While Women reported more frequent experiences of witnessing criminal voyeurism than men did, men had more experience of watching criminal voyeurism shootings than women did. There was also a gender difference in the self-protection behaviors: Women reported more frequent and various self-protection behaviors. For Ambivalent Sexism attitude, males exhibited a higher Ambivalent Sexism attitude than females, both in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to perception of criminal voyeurism, males tended to blame victims more for criminal voyeurism case than females, although sentencing judgement on criminal voyeurism did not differ by gender. According to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perpetrator responsibility and victim blame was differently related by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sub-factor. Finally,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riminal voyeurism, sexual violence, gender difference, ambivalent sexism, victim blaming